

융합적 산학협력이 대한 연구윤리

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김광환



자기 논문도 출처 안쓰고 재탕땀 부정행위

교육부 '연구 부정행위 기준' 강화
타인 저작물, 단어·문장 변형은 표절
학생 논문, 교수가 단독 발표도 안돼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을 쓴 연구자가 자신이 과거에 쓴 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재탕했다면 이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연구자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지침엔 중복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회 등에서 자기표절 논란이 이어졌다.

개정 지침에서 규정된 부당한 중복게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출처 표시 없이 반복게재해 연구비를 받거나 승진 심사 등에 활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남의 연구를 도용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표

절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말했다.

표절의 개념도 4개 유형으로 구체화됐다. 현행 지침은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 짧게 서술하고 있다. 개정 지침은 타인의 연구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나 문장을 변형해 쓰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 생각을 활용할 경우, 저작물을 번역해 활용할 때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다.

부당한 저자 표시의 상세 기준도 명시했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기여했는데도 이름을 빼면 부정행위로 규정된다. 또 지도 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 단독 명의로 학술지 등에 게재·발표하는 행위도 부정행위 사례에 포함됐다.

개정 지침에 따라 각 대학은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 전문가를 1인 이상 넣어야 한다. 검증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학은 검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부정행위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이나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연구비를 환수하고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연구자를 제외한다. 또한 각 대학 자체 규정에도 개정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배영찬 한양대 교수는 "부정행위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짜깁기가 아닌 진짜 연구가 빛을 보는 풍토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연구부정행위 유형 및 기준

◆표절

- 타인의 연구내용을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
-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미표시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을 활용하면서 출처 미표시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해 활용하면서 출처 미표시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저자 자격 부여
-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저자 자격 미부여
- 지도학생 논문을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

2. 연구윤리 위반시 재단의 학회지 조치사항

- 학회지에 대한 불이익 조치사항.

1회 발생

- 3년간 학술지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 판정년도부터 3년간
 - ※ 판정일 이전에 지원비가 지급된 경우 차년부터 3년간

2회째 발생

- (1회 발생이후 5년 이내)
- 학술지평가에 반영
 - ※ 차회 학술지평가 시에 내용평가 부분의 심사기준 및 심사내용, 논문의 독창성, 논문의 내용에 대한 평가등급을 최저 등급으로 처리

3회째 발생

(1회 발생 이후 5년 이내)

- 등재(후보)학술지에서 제외
 - ※ 차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진입을 위한 학술지평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의 분류·분석·비교·측정·시각화 등을 통하여 얻은 수치, 문구, 이미지 등 또는 연구대상의 관찰·현장조사·설문조사 등을 거쳐 얻은 수치, 문구, 이미지 등을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 자료 등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기술개발, 특허, 발명품 등을 말한다.

* 학술진흥법 제2조 5호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 마.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바.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제 1장 총 칙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적용대상)</p> <p>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와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p>② 제1항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9조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p> | <p>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p> <p>①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의 사항을 대학등 및 전문기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기업 지원 연구,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한다.</p> <p>②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장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③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직접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자신이 이미 성취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논문 등을 발표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자신의 새로운 학술적 기여를 포함

② 연구자는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윤리를 실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2.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3. 자신이 속한 대학등의 기관이 시행하는 연구윤리교육 이수

제 2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연구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p> <p>① 연구기관등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p>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p> <p>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⑦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구자의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p> |

제 3장 연구부정행위

| 연행 | 개정안 |
|--|--|
| <p>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p> <p>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p>②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p> |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p> <p>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양 인식하게 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내용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나. 아이디어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과 사고의 방식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 번역 표절: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2차문헌 표절: 재인용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 마. 말바꿔쓰기 표절: 타인의 저작물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거나 단어의 추가 또는 동의어 대체 등을 통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

바. **짜깁기 표절**: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조합하여 활용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문장을 결합하는 경우

사. **논증 구조 표절**: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나 문장은 다를지라도, 결론의 도출 방식 등 논리 전개 구조를 타인의 저작물에서 응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순위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의 명의로 단독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자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발표·게재하는 행위

가.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의 주된 내용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른 저작물에서 다시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나.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을 언어를 달리하여 다른 저작물에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다. 비록 출처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였지만, 인용된 양이나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연구로서의 가치 또는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면서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제 3장 연구부정행위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p> <p>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p> |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p> <p>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양 인식하게 하는 행위</p> <p>가. 내용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p> <p>나. 아이디어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과 사고의 방식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p> <p>다. 번역 표절: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p> <p>라. 2차문헌 표절: 재인용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p> <p>마. 말바꿔쓰기 표절: 타인의 저작물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거나 단어의 추가 또는 동의어 대체 등을 통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p> <p>바. 짜깁기 표절: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조합하여 활용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문장을 결합하는 경우</p> <p>사. 논증 구조 표절: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나 문장은 다를지라도, 결론의 도출 방식 등 논리 전개 구조를 타인의 저작물에서 응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p> |

| 순번 | 내용 | |
|----|------|--|
| 7 | 문제점 | 학위 논문과 논문의 동일성, 자기 표절, 중복 게재(출판)에 대한 시각 차 |
| | 해결방안 | 학위 논문은 학위 취득을 위한 특별한 심사를 거쳐 완성된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의 출판은 공개 목적보다는 소유 목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판단되며, 학위 논문의 연구 결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보급 가능한 창구를 확보한 학술지, 논문지에 게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학위 논문과 논문의 차별적 해석이 필요 함. |
| | 근거 | 맨체스터대학교, 바람직한 연구수행 강령, "Openness", p2, http://www.campus.manchester.ac.uk/medialibrary/policies/code-of-good-research-conduct.pdf |
| 8 | 문제점 | 기 발표 논문에 대해 연구 결과의 추가, 보완을 통하여 유명 저널(SCI급)에 재발표하는 경우의 표절, 이중 게재에 대한 판단과 기준 부재 |
| | 해결방안 | 저작권(Copyright) 이양 동의서 제출 여부, 기 출판 논문지의 승인 여부, 학문의 성격, 편집위원의 성격에 따른 기준 마련 필요 |
| | 근거 | <u>박남기(2006)</u> |

| 순번 | 내용 | |
|----|------|---|
| 9 | 문제점 | 현재까지의 관행적 논문 출판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문제 |
| | 해결방안 | 법과 규정을 통해 처벌하되 행위 당시의 처벌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불소급의 원칙을 지켜 연구자의 미래를 보호해주는 유연한 처벌이 필요 함. |
| | 근거 | 헌법(불소급의 원칙) |
| 10 | 문제점 | 저자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저자의 기술 순서, 공동 저자에 포함되어야 하는 참여 기준, 참여 비율 등은 합의된 원칙 또는 문헌 부재 |
| | 해결방안 | 정부 차원에서 세계 선진 국가가 정한 저자의 구분, 기술 순서, 공동 저자의 범위 등 기준을 마련 배포 필요, 다만 학제 간의 연구 성격을 구분하여 정의 |
| | 근거 | 실천연구윤리, 과학기술부, p118, 2007 |



학술단
“카피
출시기

2015년 4



Email Address

Password

Recent post

[회원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사용법\] 표절검사 활용 TIP : ...](#)

[\[FAQ\] 문서 업로드시 제한](#)

‘카피킬러저널’
학술단체전용
표절검사서비스

학술지 투고
논문 사전검사



학회, 연구소 기관
발간자료 사전점검



학술대회
접수논문



카피킬러 저널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확 인

| 표절률 | | 3% | |
|------|--|------|------------------|
| 검사번호 | 00010066366 | 검사일자 | 2015.04.15 10:47 |
| 아이디 | kais99@journal.copykiller.org | 발급일자 | 2015.04.15 10:47 |
| 발급형태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본보기 <input type="checkbox"/> 요약보기 <input type="checkbox"/> 상세보기 | | |
| 검사명 | 미입력 | | |
| 문서명 | kaisA-20150360_1.hwp | | |
| 비고 | | | |
| 비교범위 | [현재 첨부 문서] [내가 올린 문서 (전체/51개 문서)] [카피킬러 DB] | | |

8. 참고(<https://edu.cdc.go.kr>)

메인화면 | 질병관리본부 교육관리시스템 - Windows Internet Explorer

주소: <https://edu.cdc.go.kr/index.go>

메인화면 | 질병관리본부 교육관리시스템

HOME | SITEMAP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내강의실 교육시스템 소개 교육과정 게시판

수강과정 과정안내 수료증출력 묻고 답하기 관련사이트

안녕하십니까
김광현(dkwang)님
엄지않은 쪽지 0 통

로그아웃
나의 정보
쪽지함

예방접종 전문교육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교육과정입니다.

공지사항 동영상 묻고 답하기 교육과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NIH

- 2013.08.27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뢰기관.
- 2013.05.26 온라인 강의 진행중 오류 발생(화면).
- 2013.05.22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자 대상 교육과.
- 2013.05.22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안전관리교육 ..
- 2013.05.20 [심혈관회귀질환] 임상연구온라인 교.
- 2013.05.14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개편안내

진행중인 과정

진행중인 과정이 없습니다.

ONLINE

온라인 교육과정 신청

예방접종관리과 혈액안전감시과 심혈관회귀질환과 생물안전평가과 생명윤리연구관리과

감사합니다

